성주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구교강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21년 12월 일
제 출 자 : 구교강, 전수곤, 김영래
배재만, 김성우, 도희재, 황숙희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행정안전부 제17893호, 2022.1.13. 시행)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의원의 겸직 관련 사항을 신설하여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사항을 강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제5조, 제8조 및 별지 제1호 서식)
나.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6항에 해당 하는 경우 겸직에 대한 의장의 사임 권고 의무화(안 제5조제8항)
다. 겸직신고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성주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안 제5조제6항 신설)
라. 겸직 사임 범위 「지방자치법」에 따라 명확화(안 제5조제7항 신설)
마. 부적절한 용어 및 문장 정비(안 제6조, 별지 제2호 서식)

3. 조 례 안 : 붙 임

4. 입법예고기간 : 2021. 12. 17 ~ 12. 21

5.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2022. 1. 13. 시행)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방자치법」 제38조”를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6조”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겸직신고)”를 “(겸직신고 및 사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제4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원이「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을 “의원이「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5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성주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⑦의원은 법 제43조제5항 각 호에 따른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 제외)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⑧ 의장은 의원이 법 제43조제6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8조제2호 중 “것이「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을 “것이「지방자치법」제43조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table>
<tr><td colspan="2">연번</td><td></td><td colspan="4">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td></tr>
<tr><td colspan="8">성주군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td></tr>
<tr><td colspan="3">소속정당</td><td></td><td rowspan="3">선거구분</td><td>지 역 구</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3">성명</td><td>한 글</td><td></td><td></td><td>비례대표</td><td colspan="2"></td></tr>
<tr><td>한 자</td><td colspan="2"></td><td colspan="3">생년월일</td><td></td></tr>
<tr><td rowspan="9">겸직내용</td><td>기관·단체명</td><td colspan="6"></td></tr>
<tr><td>직 위</td><td colspan="2"></td><td>기간</td><td colspan="3">~</td></tr>
<tr><td>수행업무내역</td><td colspan="6"></td></tr>
<tr><td>분 야</td><td colspan="6">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td></tr>
<tr><td>영리성 여부</td><td colspan="6">영리 □, 비영리 □</td></tr>
<tr><td>보수수령 여부</td><td colspan="6">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td></tr>
<tr><td rowspan="3">보수 수령액 (연간)</td><td>근로소득</td><td colspan="5">원</td></tr>
<tr><td>근로소득 이외 소득</td><td colspan="5">원</td></tr>
<tr><td>계</td><td colspan="5">원</td></tr>
<tr><td>주 소</td><td colspan="3"></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8">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성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등에 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성주군의회 의원 (인)

성주군의회 의장 귀하</td></tr>
</table>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 역 구	
성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성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주군의회 의원 (인)

성주군의회 의장 귀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성주군의회의원 (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지방자치법」제46조제1항----------.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성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겸직신고 및 사임) ① --------「지방자치법」제43조제1항 ----------.
② 의원이「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원이「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⑥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성주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⑦의원은 법 제43조제5항 각 호에 따른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 제외)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신 설>	⑧의장은 의원이 법 제43조제6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등 당사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성주군수가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 2를 준용한다.	제8조(징계 등)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	2. ----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

36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 권고를 거부	4조제2항----------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 [별지 제1호서식]

연번		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			
성주군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 역 구	
성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겸직내용	기관·단체명				
	직 위		기간	~	
	수행업무내역				
	분 야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영리성 여부	영리 □, 비영리 □			
	보수수령 여부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보수 수령액 (연간)	**근로소득**	원		
		근로소득 이외 소득	원		
		계	원		
	주 소		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성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등에 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성주군의회 의원 (인)

성주군의회 의장 귀하

■ [별지 제1호서식]

연번		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			
성주군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 역 구	
성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겸직내용	기관·단체명				
	직 위		기간	~	
	수행업무내역				
	분 야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영리성 여부	영리 □, 비영리 □			
	보수수령 여부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보수 수령액 (연간)	**근로소득**	원		
		근로소득 이외 소득	원		
		계	원		
	주 소		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성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등에 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성주군의회 의원 (인)

성주군의회 의장 귀하

■ [별지 제1호서식]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 역 구		
성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성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주군의회 의원 (인)

성주군의회 의장 귀하

■ [별지 제1호서식]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 역 구		
성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성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주군의회 의원 (인)

성주군의회 의장 귀하

■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성주군의회 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변경) 신고서

성 명				생년월일					
수의계약체결 제한 관련자	총 명								
	본인 관련자 명			유	본인, 직계존·비속 명				
	배우자 관련자 명			무	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				
연번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명 (상호,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지분율	기타
1									
2									
3									
4									
5									
6									
7									
8									
9									
10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성주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등에 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 계약 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성주군의회 의원 (인)

성주군의회 의장 귀하

■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성주군의회 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변경) 신고서

성 명				생년월일					
수의계약체결 제한 관련자	총 명								
	본인 관련자 명			유	본인, 직계존·비속 명				
	배우자 관련자 명			무	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				
연번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명 (상호,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지분율	기타
1									
2									
3									
4									
5									
6									
7									
8									
9									
10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성주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등에 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 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성주군의회 의원 (인)

성주군의회 의장 귀하

붙임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제43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원
2.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단체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4.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⑥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 회의 의장은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⑦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제66조에 따른 윤리 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4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